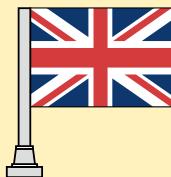


성평등 관련 영국입법동향 및 지원체계 관한 법제분석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 영국의 성평등 관련 인식과 입법의 변화

영국 사회는 오랫동안 성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남녀사이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되었고,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과도 연결되어 운영되었다. 1970년대부터 제정된 관련 규범들도 남녀사이의 평등을 골자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영국사회에서 급속도로 성평등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 문제로 변화하는 것이 변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사실 이것은 영국만의 논제라기보다는 유럽연합 또는 유럽전역의 논제이며, 이로 인하여 영국사회도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영국사회의 성평등 인식이 남녀평등 차원이 아닌 성소수자 보호와 배려문제로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정책도 등장하였다. 의회차원의 위원회 구성 및 조사, 보고서 발간 등의 기본적인 작업이 수행되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본격적인 성소수자 정책이 구현되기 시작하면서, 성평등 문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의 문제로 집중되어 많은 정책논의가 성소수자 평등과 보호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영국 정부평등청 등은 2010년 평등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성평등 문제를 사회 전체의 변화에서 진단하였고, 2016년 다양한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의회와 정부의 성소수자 평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성평등 관련 법제의 연구는 영국사회의 성평등 인식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법제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관련 법제의 규율방식이 여성 또는 성소수자 등과 같은 평등의 주체나 객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규율하려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른 영국 성평등 관련 법제

영국의 성평등 인식의 변화와 기존의 사회적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법제도 역시 변화하였다. 영국은 그동안 성평등 및 기타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과 같은 몇몇 성문법을 제정하여 적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입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 등이 있었다. 따라서 영국은 개별적인 법령을 단순화하고 개인의 권리와 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통해 통합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차별금지법제가 2010년 평등법의 제정을 통하여, 하나의 법안으로 묶이게 되었다. 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호

객체별로 나눈 것이 아닌, 행위별로 나누었다는 특징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2010년 평등법을 통해 하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복합적인 차별금지가 가능해졌다. 또한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혼인여부, 성별, 성적 지향 등과 관계없이 고용 등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평등법은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면서도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운동경기와 같이 경쟁의 공정성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차별에 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군대에서 여성 고용하거나 전투와 관련된 교육에서 여성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기관이나 조직이 합법적으로 하나의 성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여성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고, 유대교 회당에서 종교적 교리를 존중하여 남성 랍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별로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입법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이 관련 기관의 모습이다. 행정조직은 최상위 기관인 교육부 아래 '정부 평등청'(The Government Equalities Office)이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평등인권위원회'(Commissio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의 설립으로, 분산되어 있던 차별금지 관련 기구를 통합하고, 단순한 성차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시사점

영국 사회의 성평등에 관한 인식이 남녀의 문제에서 소수자 보호의 문제로 이동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성평등과 다양성의 추구하는 가치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여러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해왔다.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사회인식 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점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평등법은 여러 분야의 차별과 평등의 문제들을 통합하고 성평등을 포함한 여러 평등의 규율문제들을 묶어서 조화시키는 노력이 입법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이 분야의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법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점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 입법은 성평등에 관한 영국의 사회인식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입법에 따른 평등청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영국 정부의 행정기관인 평등청이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평등문제를 망고롭게 처리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융통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차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통합적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 및 전문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통합된 법의 통합된 적용과 집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관들이 온라인 및 전화상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용이하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작지만 중요하다. 영국 사회에 평등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보다 잘 스며들게 하려는 모습이다. 평등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독립기구이지만 행정부와 업무를 협조하고 있고, 차별금지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청과 평등인권위원회의 연계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